

파주시시세감면조례 개정

의안 번호	3-249
----------	-------

제출년월일 : 2004. 5. 19.

제출자 : 파주시장

□ 개정이유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화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2조)

나.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내용에 따라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조항중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함(안 제24조)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구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으로 한다.

제24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후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대한 감면) ②-----협동화사업실천계획-----
제24조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후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04년 5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화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내용에 따라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조항중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함. (안 제24조)

3. 검토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과 도시형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2조에서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하여 왔으나,
-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협동화사업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안 제24조에서는 경기침체와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에 따른 수도권 산업기반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형 공장의 유치를 위하여 준공업지역안에서 신증설되는 도시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경감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조항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준공업지역은 문산읍 선유리 643-1외 177필지이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이란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서 3층 이상 6개 업체 이상이 입주하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음.